

7. 감사의견서

농협법 제71조 1항, 정관 제139조 1항에 의하여
2025년 12월 31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보고서
(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잉여분처분안)의
작성안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함.

2026년 01월 12일

포천농협

상 임 감사 박헌모 [인]

비 상 임 감사 이춘홍 [인]